



전파와 극초단파 기술 관련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손해 배상액 산정 관련 항소심 사건

24

Litton System Inc. v. Ssangyong Cement Industrial Co., Ltd., 107 F.3d 30 (1997)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순회 항소법원	사건번호	96-1034, 96-1047
판결 일자	1997. 2.13.	판결 결과	원심 파기 환송
원고 (피항소인)	리톤 시스템(Litton System, Inc.)		
피고 (항소인)	쌍용양회(Ssangyong Cement Industrial Co., Ltd.), 쌍용 주식회사 (Ssangyong Corp.), M-SQUARE MICROTEK, INC. 등		
참조 법령	18 U.S.C. § 1962(d), 15 U.S.C. § 1126(b), §1126(h), § 1126(i), § 1117(a), Cal. Civ.Code § 3426.3.		
참조 판례	Toho Co. v. Sears, Roebuck & Co., 645 F.2d 788 (9th Cir.1981), Verlinden B.V. v. Central Bank, 461 U.S. 480, 493 (1983), Anheuser-Busch, Inc. v. Natural Beverage Distribs., 69 F.3d 337, 348 (9th Cir.1995), See Unilogic, Inc. v. Burroughs Corp., 12 Cal.Rptr.2d 741, 749-50 (Cal.Ct.App.1992)		
영업비밀	전파와 극초단파 기술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랜햄법(Lanham Act), 연방 관할권, 불공정경쟁행위, 손해배상액		

02 사건 개요

원고는 엠스퀘어가 전파와 극초단파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과 문서들을 부정취득하여 이를 피고 회사로 이전시킬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쌍용과 엠스퀘어를 상대로 소 제기와 함께 증거 제출 절차를 신청했다.

원고는 원고 회사 직원이던 루빈 리가 퇴사하여 엠스퀘어를 설립할 때 원고 회사의 문서들을 가지고 갔으며,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와 만나 투자 계획을 세웠으며 원고의 소 제기 전후에 관련 문서들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쌍용은 엠스퀘어와 극초단파 제품 생산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그에 따라 전달된 기술도 없다고 한다.

피고 쌍용의 고위 임원인 김재호는 소송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요청된 개인 파일들을 파괴했다.

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과 엠스퀘어에 대한 피고 쌍용의 지배력, 그리고 과소출자(undercapitalized)에 근거하여 엠스퀘어는 피고 쌍용의 “또 다른 자아(alter ego)”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쌍용의 행위과 피고의 행위로 간주된 엠스퀘어의 행위에 근거하여 결석 판결(entry of a default)¹⁾ 를 내렸다.

본 사건은 피고가 이에 항소한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피고는 원고의 전 종업원 루빈 리와 접촉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을 전달받아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그 증거를 인멸했다.		지방법원은 “연방 불공정 경쟁”의 소에 대한 사물관할권이 없다. 지방법원이 적절한 공판의 진행 없이 핵심 쟁점에 대해 피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기에 피고에 대한 결석 판결은 부적절하다. 피고가 영업비밀 절취를 통해 얻을 것이라 예상한 이익에 기반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오류이고, 원고에게 유리한 모든 판결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1) ‘Entry of a default’ 또는 “Defalut Judgment”란 소송 당사자 일방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다른 일방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04 판결 요지

랜햄법(Lanham Act) 44조²⁾와 한미우호통상 조약에 따라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연방 관할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 회사인 원고는 불공정 경쟁행위를 근거로 조약체결국의 회사인 피고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주 법에 근거한 권리와 구제들을 주장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크게 대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고 주요 사실과 관련한 분쟁들에 대해 원고의 입장을 받아들인 지방법원의 절차들은 하자 있다.

엠스퀘어가 피고의 “또 다른 자아”라는 판단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력과 과소 출자 여부와 같이 사실상의 쟁점들이 존재하였고, 결석판결과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쟁점 모두 사실관계에 크게 의존하여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절취 당시 예상된 이윤의 현재 가치”를 근거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지방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법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

05 Key Point

이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들과 달리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혹은 피고가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했는가 등의 문제 이전에 결석 재판(default judgment), 증거인멸 등 증거법 또는 소송법상의 이슈가 문제된 사건으로, 미국에서의 법적 분쟁 대응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잘 나타내준다.

2) 원문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5/1117>